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노2870 판결 모욕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8 형 사 부

판 결

사건 2013노2870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지은(기소), 유상민(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3고정3313 판결

판결선고 2013. 10. 3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현직 국회의원인 피해자 C의 SNS 발언에 대하여 그 주장의 부당성, 국회의원의 자질을 문제 삼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라 할 것인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경멸적 개별 문구에 대한 동기나위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 언사만을 문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가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글의 게시 경위, 모욕적 표현이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수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감정의 표출에 중점이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1 당시 G당 국회의원이었던 H이 I 서울시장 아들의 척추MRI사진을 근거로 병역비 리의혹을 제기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나 아들의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병역과 관련된 비리가 없음이 밝혀져 H은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H의 의견에 동조하며 병역의혹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였던 J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F도 I 서울시장에게 사과를 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전문가의 소견이 아무 의미가 없네요.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면 기어다니고 몹시 고통받는다 했는데 특이체질인거죠. 군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MRI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냥 가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라는 글을 트위터를 통하여 올린 데 피고인이 화가 나 이 사건 글을 올린 점, 2 피고인이 이 사건 글에서 피해자에게 'XX 년'이라는 욕설을 하고 '터진 주둥아리', 피해자를 이런 게'로 지칭하는 등 피해자를 경멸하는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이런 게 국회의원하고 자빠진 한심한 대한민국'이라며 피해자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재만 있을 뿐 피해자의 행태에 대한 구체적 비판과 피고인의 의견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글은 피해자의 정치적 행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감정의 표출에 중점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이유 없다.

####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정치적 의견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에 기대어 이루어지는 모욕적 표현은 그전파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판사 하현국(재판장) 허경무 김대현